

## 6

##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 연장 및 최소납부적용(법 §15②)

### ①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감면율)     : 취득세·재산세(도시지역분포함) 100%     * 100% 내 조례로 정하는 율 × 지자체 투자비율  <u>※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* ~25.12.31.</u>     * 부칙(법률 제15295호, 2017.12.26.) 제7조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(유예 종료)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  <u>※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종료</u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p>

### □ 개정내용

-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고, 그 간 세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유예하였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

### □ 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
- 2026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[부칙(법률 제15295호, 2017.12.26.) §7조]